

국제교역에 있어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조치의 내용 분석

Analysis of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International Commerce

이재영(Jae-Young Lee)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연구원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환경문제의 특성과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 참고문헌 |
| III. 환경관련 국제협정과 WTO협정의 규범 분석 | Abstract |
| IV.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조치의 내용분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roblems of trade restriction for an environment protection. Environmental regulation relate to trade a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 Their Disposal,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nd WTO Agreement.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economics instrument, command & control, liability, damage compensation, voluntary agreement. In the case of our country, impact of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low. Because is recognized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y yet.

For in the balance rules of trade and enviroment, First must satisfy WTO's basic principles and principle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prohibition, Second, operation of protection action must reasonable and objective standards Third, must satisfy GATT article 20 (b) clause and (g) protestation each essential factor

To grow for environment advanced country, we should do i) using of FTA ii)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engthening for developing country position iii) construction of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Key Words : Environmental Protectio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restriction

I. 서론

오늘날 지구환경문제는 각국의 오염배출과 환경파괴문제가 더욱 확대되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지구환경파괴의 영향은 환경 문제가 가지고 있는 월경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가 환경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이견차이가 크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국가간의 충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산림황폐, 사막화 등 지구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는 각종 국제환경협정의 체결 및 개별 환경규제조치 강화를 통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환경협정(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이하 MEAs로 칭함)은 43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여러 협약이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에서 UN 인간환경선언을 필두로 UN환경개발회의(UNCED) 등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왔으며,¹⁾ 특히 환경과 경제 혹은 환경과 무역의 연계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제경제기구인 OECD와 WTO 산하의 전문기구를 중심으로 90년대 초반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환경원칙 및 개념의 주요 근원으로는 국제환경협약 또는 지역환경협약, OECD등 국제기구의 원칙 및 권고안, UNCED의 리우선언과 의제21 등을 들 수 있다.

국제교역과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동걸의 연구²⁾, 강상인·박준영의 연구³⁾, 한주섭·홍성규의 연구⁴⁾, 정형진의 연구⁵⁾, 이은섭·이양기의 연구⁶⁾, 이춘삼의 연구⁷⁾ 가 있다.

본 연구는 환경관련 국제규범과 WTO 환경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보호 관련 규제조치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규제조치에 대한 수출기업이나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환경관련 규범들이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다양한 관계로 인하여 주대상을 무역규제를 담고 있는 협정에 한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UN이 국제 환경보호를 위하여 1972년 스톡홀름 회의(United Natio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 : UNCHE)에서 "UN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UN 환경계획(UNEP)"을 수립한 것을 논의의 시작이라 보고 있다.(Weiss, Edith Brow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 The Introductory Framework." Environmental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United Nation University Press, 1992, p. 7.)

2) 이동걸, 『무역과 환경』, 산업연구원, 1995.

3) 강상인·박준영,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원, 1999.

4) 한주섭·홍성규, "WTO 체제하에서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1998.

5) 정형진, "WTO에서 무역과 환경", 「상사관계연구」, 제19집 제2호, 2006. 6.

6) 이은섭·이양기, "WTO체제하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무역학회지」, 제30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5. 6.

7) 이춘삼, "WTO 협정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성립요건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6.

II. 환경문제의 특성과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1. 환경문제의 특성

첫째 환경문제는 이해당사자간 즉 환경선진국과 환경 개도국이나 후진국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환경문제가 UN, OECD, WTO 등에서 주요한 의제로 나타나게 됨에 따라 다자간체제에서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식을 두고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에게 현재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선진국에게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에 있어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선진국의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안의 도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환경문제는 월경성과 그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규범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그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가 불특정한 다수의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⁸⁾

한 나라의 오염배출은 자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오염배출에 대한 문제를 개별 국가가 자국법을 근거로 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간섭할 경우 주권침해의 소지 등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무를 지우는 동시에 국제적인 환경보호에 대한 통일규범을 통하여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극복이 최선의 대응방안인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규범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특히 다양한 환경의 범주에 따른 다양하고 세분화된 환경보호 국제규범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2. 환경 관련 주요 원칙

환경 관련 주요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들 수 있다. 1992년 UNCED에서 채택된 리우선언의 원칙 3은 “성장에 대한 권리는 현재 및 미래세대의 성장욕구와 환경욕구를 공평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⁹⁾ 그 기술하고 있고, 원칙 4는 “지속가

8)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은 지구의 평균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효과를 통해 홍수, 한발 등 각종 이상 기후 현상을 유발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의 원인이 되고 프레온 가스의 배출은 지구의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여 유해한 자외선이 대량 유입되어 피부암 등 각종 피해를 조래한다.

9) Rio Declaration, Principle 3 : "The right to development must be fulfilled so as to equitably meet developmental and environmental need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

능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이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분리되어 따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천명하고 있다.¹⁰⁾ 즉 지속가능성장은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공평한 결실이 돌아가도록 하는 성장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정책과 성장정책이 통합되어야 하며 정책의 투명성이 유지되고 정책결정시 일반대중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UNCED에서는 재차 확인하였다.¹¹⁾

두 번째로 OECD는 1972년 “환경정책의 국제 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도 원칙(Guiding Principles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s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에서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s)을 채택하였다. 오염자부담원칙이 국제무역규범으로 인정되면 수입국의 환경규제수준에 의한 오염자부담분을 수출국에 강요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수입국이 “관할권 밖(Extra-jurisdictional)의 생산 행위” 즉 타국의 생산행위도 규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할권 밖”의 생산행위에 대한 규제는 형행 WTO규정 하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¹²⁾ 이 외에도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와 책임과 보상의 원칙(Liability and Compensation Principle)이 있다.

3. 주요 국제기구의 동향 분석

1) UN

UN차원의 무역과 환경에 대한 논의는 주로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형성 및 무역과 환경 문제간 연계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엔차원에서의 무역과 환경 연계문제에 대한 논의 및 해결은 산하기구들의 관리하에 고유의 독립적인 환경보호 목적을 위해 체결된 개별 다자간 환경협정(MEAs)의 무역규제 관련조항들로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 제12조는 환경목적의 무역조치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차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방주의를 회피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같은 유엔차원의 환경과 무역 연계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¹³⁾

10) Rio Declaration, Principle 4 :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annot be considered in isolation from it."

11) 그러나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는 달리 이에 관한 실행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또는 경제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하여 환경 관련 논쟁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자기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오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동걸, 『무역과 환경』, 산업연구원, 1995. pp. 55-56., p. 64)

12) 본 지도원칙의 오염자부담원칙과 관련하여 무역조치를 취하거나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OECD의 입장은 오염자부담원칙이 국내환경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원칙이지 무역과 관련된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GATT Dispute Panel Report,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1991)

13) Rio Declaration, Principle 12 : "States should cooperate to promote a supportive and open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at would lead to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ll countries, to better address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Trade policy measures for environmental purposes should not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Unilateral actions to deal with environmental challenge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should be avoided. Environmental measures addressing transboundary or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should, as far as possible, be based on an international consensus."

UN이 주요 논의대상으로 삼는 지구환경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이 관계된 남북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세대의 번영과 후세대의 생존기반에 관한 세대간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다.

2) OECD

OECD는 1991년 6월에 구성된 무역과 환경 전문가회의는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를 통하여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1993년 무역과 환경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한 절차적 지침(Procedural Guidelines)이 개발되었고, 동 절차 지침은 각국의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이 여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¹⁴⁾

무역과 환경 전문가회의는 또한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995년 보고서를 통해서 적절한 환경정책이 수반되는 경우 무역자유화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이 국가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WTO 규정에 반하는 보호무역주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확대를 위해 자국의 환경 및 보건기준 등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개별 국가차원의 환경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품의 생산공정 및 생산방법에 기초한 무역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제품의 성격과 관련이 없는 생산공정에 근거한 무역규제 조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국경을 넘는 오염의 확산이나 지구환경에 위협을 주는 오염문제와 관련된 환경규제는 국제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환경보호가 배출된 오염을 제거하는 형태의 사후처리 개념으로부터 제품의 개발단계부터 오염 유발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사전예방 차원으로 발전해 가면서 제품의 전과정에 입각한 환경성 평가(Life Cycle Assessment)개념이 도입되고, 이와 관련한 평가에 있어 투명성 제고, 국제적 기준의 정립, 개별국 인증제도의 상호 인정 등 평가제도의 정립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였다.

회원각국에서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환경세제를 도입한 국가의 산업체들이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행 WTO 체제 내에서 환경세의 국경조정을 허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종전 제품에 부과되는 환경세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요소에 부과되는 환경세에 대해서도 국경조정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을 밝혔다.

14) OECD Joint Working Party on Trade and Environment의 절차적 지침이란 각국 정부는 무역 및 환경정책의 개발과 이행의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Transparency and Consultation), 각국 정부는 무역 및 환경정책이 여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Trade and Environment Examinations, Review, and Follow-up), 각국 정부는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부정적 무역효과 제거를 위해 협력해야 하며(International Environment Co-operation), 무역 및 환경 관련 분쟁의 경우 당사국은 환경·무역·과학·전문적 사항을 고려하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Dispute Settlement), 1993. 6.

3) WTO

WTO 무역·환경위원회¹⁵⁾에서 무역과 환경과 관련한 10가지의 의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1997년 이후의 논의는 10개 의제에 대해 이루어진 그간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각국의 상이한 여러 여건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 및 경험에 입각한 분석가 토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당초의 10개의 의제는 상호 연관성에 따라 시장접근에 관련된 의제그룹과 다자간 환경협정과 다자간 무역체제 간의 연계에 관련된 의제 및 기타 의제그룹으로 논의하였다.

시장접근에 관련된 의제는 의제 2의 국내환경정책과 다자통상체제(MTS)와의 관계, 의제 3의 MTS 규정과 환경목적의 부과금 관계, 기술규정 및 표준, 포장, 환경마크, 재활용 등 환경관련 요건과의 관계, 의제 4의 환경 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 의제 6의 환경조치와 시장접근, 무역왜곡조치 제거를 통한 환경이익에 관한 의제이다.

다자간 환경협약과 다자간 무역체제 간의 연계에 관련된 의제에는 의제 1의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다자통상체제상의 관련 규정과의 관계, 의제 5의 MTS와 MEAs의 분쟁해결체제에 관한 의제, 의제 7은 국내판매금지품(DPG)의 수출문제, 의제 8은 지적재산권 협정과 환경문제문제로 볼 수 있다. 기타의 의제로 서비스와 환경에 관한 의제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증진에 관한 의제이다.

그간의 논의경과를 보면 대부분의 개도국은 선진국의 높은 환경기준 및 일방적 환경규제가 개도국 상품의 수출시장접근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WTO가 다자간 환경협정(MEAs)상 무역조치를 자동 수용하게 될 경우 보호무역조치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WTO 내에서의 환경논의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환경정책과 여타 경제 무역정책간의 국내적 조정 및 통합기능이 부족하여 무역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현상 유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무역과 환경 연계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2001년 11월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환경과 무역에 대한 협상은 국제적 차원은 물론 국내적 차원에서의 환경보호를 노력함으로써 세계무역규범을 조화시키고 환경서비스 및 환경상품의 국제적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환경기술의 국가간 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4)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화기구는 국가표준화단계의 전 세계적인 연합체로 국제 규격을 준비하는 작업은 보통 ISO 기술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기술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국제규격안은 투표를 위하여 국가 회원기관에 배

15) WTO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을 통해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형평성을 갖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는 일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사이에는 정책적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라케시 각료회의는 이어 무역과 환경문제를 다룰 무역·환경위원회(CTE)의 설치에 관한 권고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는 1995년 3월 무역·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1996년 12월 무역과 환경문제에 관한 의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포된다. 국제규격안이 국제규격으로 발행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참가한 회원국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경쟁력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시험, 검사를 통하여 기업이 생산한 제품 자체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방법과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제반 경영체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으며, ISO가 다루는 시스템인증제도는 후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서, 제3자가 기업의 경영체제가 관련 시스템 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즉 대부분의 ISO 표준이 특정한 제품, 원료 또는 공정에 대한 규정인데 반하여, ISO 9000(품질경영)/14000(환경경영) 등 시스템 표준은 경영체제에 관한 규정이며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것이다.

이 가운데 환경과 무역 연계논의와 관련이 있는 ISO 14000 시리즈에는 환경경영체제, 환경감사, 환경라벨링, 환경성과 평가, 수명주기 평가, 제품환경 기준, 용어 및 정의별 국제규격제도가 포함된다. 1991년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CED)에서 ISO/IEC에 환경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을 요청하였다. 1993년 ISO/IEC는 환경전략자문그룹(SAGE)을 설치하고, 동 그룹의 건의에 따라 ISO/TC207을 설립하여 1996년 ISO 14001 국제규격이 제정되고 각국에서 ISO 14000 인증제도가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하였다.

ISO 14000 관련 표준은 현재 11종의 규격이 제정 완료되어 있으며, 주요 규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경영체제규격(EMS, ISO 14001, 14004)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위한 요건 및 지침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심사규격(ISO 14010, 14011, 14012)에는 심사반 구성, 심사절차, 심사원의 자격요건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무역과 환경 논의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라벨링 규격(EL, ISO 14020, 14021)은 환경라벨링의 유형별 사용 방법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체제 규격이 조직 경영체제의 환경성 평가규격인데 반하여 환경라벨링 규격은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규격이다. 다음으로 환경성과 평가규격(EPE, ISO 14031)은 조직체의 환경경영 노력의 결과를 객관적 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하는 기법을 정하고 있으며, 전과정 평가 규격(LCA, ISO 14040, 14041)은 제품의 원료채취로부터 제조, 유통, 소비,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법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환경라벨링 인증을 위한 기술적 기반으로 사용된다. 용어규격(ISO 14050)은 ISO 14000 규격에 활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기타 규격으로 제품설계에서 환경측면 고려를 위한 지침 등이 있으며, 상기 각 분야에 대하여 10종의 규격이 추가 제정될 예정이다.

4) 시사점

OECD 무역과 환경 전문가회의의 작업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근거한 환경규제, 제품의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 환경보호 목적의 조세에 대한

국경조정 등 환경측면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주제들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어 자유무역의 원칙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환경정책의 무역과급효과를 중점논의하고 있는 WTO 무역환경위원회(CTE)의 활동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국제표준화기구에 설치된 환경기술위원회가 국가간 환경요건의 차이가 새로운 무역분쟁화되지 않도록 각국의 환경관련 규격의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ISO 14000 시리즈는 각 국가가 자동적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지만, 사실상 소비 및 생산패턴에 영향을 주어 무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제품 자체보다도 제품의 제조공정(PPMs)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제품 무관련 PPMs에 의한 무역제한조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WTO TBT 협정상 관련 규정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¹⁶⁾

현재의 WTO의 기능이 지역경제블록화 등으로 다자간체제의 위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WTO의 주관하의 강력한 환경규범의 진행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환경 관련 국제규범의 WTO의 틀 안에서가 아닌 별도의 다자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환경 관련 국제규범이 WTO규범과의 상충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동향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III. 환경관련 국제협정과 WTO협정의 규범 분석

1. 다자간환경협정(MEAs)의 의의

다자간환경협정은 지구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다. 이들 환경협정¹⁷⁾의 일부는 매우 구체적인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기후변화협약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의 현 경제활동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갖는 환경협정도 존재한다. 개개의 환경협정이 다루는 환경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특수한 것인 경우 개별 환경협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해당 환경보호의 목적을 넘어서는 수준의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협약에 사용된 무역조치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16) 김기홍 외, 『무역과 환경』, 집문당, 2005, pp. 455-458, p. 478

17) 일반적으로 Agreement는 협정으로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서 조정하기가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체결주체는 정부가 해당된다. Treaty는 조약으로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의 문서로서 주로 당사국간의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며 체결주체는 국가가 된다. Convention은 협약으로 양자조약의 경우 특정분야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많이 사용되며 국제기구의 주관하에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조약의 경우에도 흔히 사용된다. Protocol은 의정서로 의정서란 명칭은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전문적인 성격의 다자조약에도 많이 사용된다.(외교통상부, 알기쉬운 조약업무, 2006)

환경협약이 갖는 특수한 문제와 목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⁸⁾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정은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분야에서 430여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비엔나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47개의 환경협정에 가입하고 있다.¹⁹⁾

〈표 1〉 국제환경협정 및 우리나라 가입현황

구 분 Classification	계 Total	대기기후 Air Climate	담수보호 Clean Water Protection	해양어업 Marine Fishery	자연· 생물보호 Animal & Plant Conservation	핵안전 Nuclear Security	유해물질· 폐기물 Toxic Substances	기 타 Others
채 택 Adopted	221	14	15	86	50	13	13	30
발 효 Enforced	164	10	9	66	40	12	8	19
가입 Joined	47	8	-	16	7	7	2	7

자료 : 환경부, 2007환경백서, 2007.

이들 협약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규제 조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후변화협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 협약의 규제대상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다양하다.

MEAs은 협약체결국간 합의한 사항을 담고 있는 협약으로 이를 위반하는데 대한 규제조치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경우 이러한 규제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것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부 협약은 보다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협약체결국의 국제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0여개에 달하는 MEAs 중 20여개는 당해 환경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무역규제와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규제조치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당해 환경협약상 규제물질의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금지) 및 일정한 요건하에서의 인가와

18) 강상인·박준영,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원, 1999., p. 29.

19) 환경부, 2007 환경백서, 2007, p. 128.

같이 무역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고전적 형태의 무역조치이며, 두 번째는 라벨링요건이나 포장요건과 같이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조치가 있고, 나아가 일부 MEAs에서는 당해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의 금지와 같이 비무역적 규제조치를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역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MEAs 중 주요한 것으로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및 바이오 안정성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PIC 협약²⁰⁾, 국제열대목재협정²¹⁾ 등이 있다.²²⁾

한편, 무역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 MEAs들을 무역조치의 적용대상국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당해 협정 당사국들 간에서만 그러한 무역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MEAs로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속하며 둘째, MEAs상 무역조치를 협약 당사국들간에 적용함은 물론 비당사국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협정으로 CITES, 바젤협약 등이 이에 포함된다. 셋째, 당해 협약의 비당사국에 대해서만 무역조치를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몬트리올의정서가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러한 MEAs의 무역규제조치가 다자간 무역체제인 WTO 자유무역 규범상 수량제한금지(GATT 1994 제11조)나 내국민대우(GATT 1994 제3조)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GATT 1994 제20조는 자유무역원칙의 일반적인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MEAs의 무역규제조항이 이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GATT원칙이 상충됨으로서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²³⁾

2. 무역관련 주요 다자간환경협약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CITES 이하 CITES로 칭함)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시급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협약으로서²⁴⁾ CITES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동 협약의 목적에 벗어난 동식물의 당사

20) Rotterdam Convention on Prior Informed Consent, PIC treaty

21)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83,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열대 목재림의 최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2) 이중에서도 특히 협약에 규정된 무역조치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의 대외교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약으로는 교토의정서 및 바이오안정성 의정서가 주목된다.(김기홍 외, 『무역과 환경』, 집문당, 2005, pp. 516-518.)

23) 따라서 각국은 DDA 무역과 환경협상을 통해 MEAs상의 무역규제조치와 WTO 기존 규범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규제조치를 “특정무역조치(specific trade obligation)”라고 부른다. 이 특정무역조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협상대상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둘러싸고 각 국가에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김기홍 외, 전제서, 2005, pp. 516-518.)

24)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 가입하였고 동년 10월 7일 발효되었다.

국간 거래를 수출허가 내지 수입허가의 방법 등을 통해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비당사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비상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수출입 허가서 및 증명서의 경우 상세한 요건을 열거하여 이를 충족한 경우에 한해 당해 문서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ITES에 있어 보호대상 동식물에 대한 수출입허가 및 거래금지 등과 관련한 거래규제조치는 GATT 제11조의 이행위반이 될 수 있으며 사육종 및 인공번식종과 야생동식물에 대한 다른 무역조치를 취할 경우 동종 상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CITES는 WTO 규범과의 상충 가능성이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가 당사국이며 비당사국들도 제10조에서 요구되는 “협약상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문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CITES상 무역조치 규정을 둘러싼 국가간의 무역분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규제대상 품목의 교역량이 많지 않아 그렇게 크지는 않다.

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이하 몬트리올 의정서로 칭함)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6년을 기준으로 CFCs, 할론 등 소비량의 단계적 감축일정을 규정하고 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위하여 1989년 1월 1일 발효된 환경협약이다.²⁵⁾

본 협약은 당사국간의 무역규제에 관해서는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제2조(규제조치 ; 규제물질은 CFC 4종과 할론 3종 등 총 8종) 및 제3조(규제치의 산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의정서는 기본적으로 규제대상물질의 당사국간 무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의 경우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일정에 따라 감축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사국간의 무역규제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한편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에 있어서는 당사국은 비당사국에 대한 규제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고, 비당사국으로부터 규제물질이 포함된 제품수입을 금지하고 규제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허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직접적인 무역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은 규제물질의 생산기술을 비당사국에 이전해서는 안되며 당사국은 규제물질의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품, 시설 또는 기술을 비당사국에 수출하기 위해 보조금, 원조, 금융 또는 보험상 지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는 등의 비무역적인 규제도 부과하고 있다.

25)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경우 최초 1987년 9월 채택되어 1989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이후 규제물질을 20종으로 확대(CFC 10종, 사업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 추가지정)한 몬트리올의정서의 런던 개정서(The Londo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 1992년 8월 10일 발효), 규제물질을 95종으로 확대(HCFC 40종, HBFC 34종, 메틸브로마이드 추가지정)한 몬트리올의정서의 코펜하겐 개정서(The Copenhage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 1994년 6월 14일), 2000년부터 규제물질에 대한 수출입허가제도 시행과 메틸브로마이드의 비당사국의 교역을 금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몬트리올 개정서(The Montreal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 1999년 11월 10일 발효), 염화불화탄화수소의 생산기준 및 동결기준을 설정한 몬트리올의정서의 북경 개정서(The Beijing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 2002년 2월 25일 발효)로 발전하여 왔다.

이 의정서는 비당사국과의 무역규제에 관한 규정의 경우 비당사국을 차별함으로써 WTO/GATT상 첫 번째 일반 의무인 MFN 원칙에 어긋나며,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등과의 상충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몬트리올 의정서는 계속 개정되어 비당사국 수가 증가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

현재의 몬트리올의정서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규제물질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입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러한 물질이 우리나라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적 감축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진국이 국내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조치를 시행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이하 교토의정서라 칭함)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일명 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21일 발효된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기본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으로 이후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로 하여 선진국(EU 포함 39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1990년 대비 평균 5.2%의 감축)와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한 내용으로 하여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에는 부속서 I 26)당사국이 배출량 감량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국내정책 및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교토메카니즘 즉,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의 운영방법이 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동이행제도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청정개발체제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부속서 I 국가에 속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지적인 바와 같이 조만간 의무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감축

26) 교토의정서는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설정(제3조),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에너지효율 기준을 적용하고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 직접적인 수출입 규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무역 관련 기술장벽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배출감축 목표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 것인가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날 것이다. 만일 감축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단위 감축 비용이 선진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비록 감축의무를 받더라도 선진국에 대한 국제경쟁력은 오히려 강화된다. 반면 중국과 같이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개도국에 대한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 외에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의 경우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과학기술의 협력과 오존층 파괴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를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5월 27일 발효하였다.

4)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 Their Disposal ; 이하 바젤협약이라 칭함)

1994년 2월 28일 가입한 후 동년 5월 29일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타국으로 이동(수출·입)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해폐기물 수출국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취급할 적절한 시설이 없거나 수입국에서 재활용이나 자원회수 산업에 투입될 원자재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바젤협약 제4조 제5항에는 수은, 카드뮴 등 45종의 유해폐기물을 지정하고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협약 비당사국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당사국간의 무역규제에 관해서는 당사국은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국은 수입을 금지한 당사국에 대해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 유해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밖에 수출국은 수입자로부터 사전 통보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없을 경우 재수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바젤협약은 무역규제 규정은 GATT 제1조 및 제11조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폐기물이 상품인지 여부 자체가 명백하지 않아 동 협약상의 수출입 금지조치가 GATT 동 조항과 상충되는지 여부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비록 이 양자간의 관계가 상충된다 하더라도 바젤협약 자체의 무역조치는 비당사국에 대한 교역규제이므로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받게 될 교역상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6)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 이하 의정서로 칭함)

본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의 부속의정서로 2003년 9월 11일 발효되었다. 채택 목적은 현대생명공학기술로부터 탄생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분야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고 특히 국가간 이동에 초점을 두어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 의정서는 LMO의 식용 및 사료의 직접적 이용 및 그 가공을 위한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서 각국이 LMO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확실한 과학적 정보 및 지식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당사국은 식용이나 사료 또는 가공의 용도로 LMO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예방원칙은 WTO 위생 및 검역조치협정과 상충될 여지가 있고 취급, 운송, 포장 및 명기사항에 관한 규정은 WTO 무역관련 기술장벽 협정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GMO(유전자변형물질) 농산물 수입국이므로 본 의정서에 의한 무역규제는 수입국으로서의 우리 입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3. 환경보호 관련 WTO의 규범

GATT 제20조에서는 동일한 조건에 있는 국가간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규제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각 체약국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²⁷⁾ GATT 제20조는 체약국에게 무제한적으로 예외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 “협약의무로부터의 제한적 조건부 예외(a limited and conditional exception from obligations)” 규정이다.²⁸⁾

GATT 제20조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별적 무역규제조치 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Necessity), 특정 무역규제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정당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무역제한적 조치이어야 하고(Least Trade Restrictiveness), 관련 국내조치와 보완적이어야 하며(Complementarity),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Proportionality).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예외조항을 원용한 국가가 그 조치의 정당성을 증명할 의무를 지게 된다.

SPS협정(Agreement on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이하 SPS협정이라 칭함)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무역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협정이라 칭함) 또한 사람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환경보호, 포장, 마크 및 라벨링 등에 대한 기만적 행위 등의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27) GATT 제20조 (a) 공공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b) 인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28) GATT Dispute Panel Report, United States-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89. ; GATT Dispute Panel Report,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1991.

29) 이재영, “WTO 기술무역협정과 위생 및 식물검역협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12, pp. 196~198.

IV.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조치의 내용분석

환경보호 조치와 관련한 규제는 첫째, 규제조치의 성격에 따라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둘째, 규제대상에 따라 제품에 대한 규제와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제 셋째, 국가관할권의 귀속여부에 따라 관할 내적 규제와 관할외적 규제 넷째, 관련조항의 규범에 따라 국제환경협약이나 기타 관련 국제규범의 규정에 입각한 다자간 규제와 국내법상의 관련규정에 입각한 일방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³⁰⁾

1.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

환경규제는 그 수단에 따라 간접적 수단 즉, 경제적인 의무를 지우거나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경제적 이용가치를 인정한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수단(economics instrument)이라 칭하고 이와 대별되는 직접규제(command and control)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수단에 의한 규제조치로는 환경세 및 부과금, 이용자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도, 예치금제도, 각종 등록세 등을 들 수 있으며 직접규제 조치로는 오염물질 및 환경 비친화적 제품 또는 생산에 대한 금지 및 제한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분 이외에도 환경정책 수단의 분류를 명령 및 통제, 경제적 수단, 준수 의무 및 손해배상, 교육 및 정보, 자발적 협약, 국토 및 지역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환경정책 수단의 분류

범 주	예 시
명령 및 통제 (command and control)	면허 및 허가, 환경기준, 배출기준, 공정기준, 제품기준
경제적 수단 (economics instrument)	부과금, 조세, 배출권 거래제, 보조금, 예치금 및 상환제도
준수 의무, 손해배상 (liability, damage compensation)	엄격한 의무규정, 보상기금, 강제보험
교육 및 정보 (education, information)	정보확산, 기술정보전파, 우수환경경영사례 홍보, 환경교육, 제품라벨링, 환경회계 및 보고, 환경지표, 환경진단
자발적 협약 (voluntary agreement)	환경목표 및 환경정책 수단에 대한 자발적 협약
국토, 지역개발 계획	지역개발 및 토지사용

자료 : OECD, ENV/EPOC/GEEI, 1995. 10, p. 6 ; 강상인·박준영,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원, 1999.

30) 이동걸, 전게서, 제5장~제8장 참조 ; 이훈삼, “WTO 협정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성립요건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6. pp. 34-38 참조.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수단에 의한 규제가 직접규제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첫째 경제적 수단에 의한 규제는 기업간의 한계오염저감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직접규제보다 효율성이 뛰어나다. 둘째, 배출량에 따른 공해부과금 등은 장기적으로 기업이 오염저감비용을 감축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동태적 효율성이 높다. 셋째, 경제적 수단은 시행상의 신축성이 높다.³¹⁾ 넷째, 경제적 수단은 직접규제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투명성이 높다. 특히 제품에 부과되는 환경세의 경우는 투명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나 예치금제도는 외국 기업에게 투명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다섯째, 경제적 수단은 직접 규제보다 국내의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조작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보호무역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직접규제의 경우는 대상 제품의 특성, 기술규제사항, 이행기간 등의 결정에 있어서 국내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수단이 일반적으로 직접규제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규제가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또한 경제적 수단과 직접규제가 동시에 활용될 필요성도 있다. 또 경제적 수단이 직접규제보다 국제무역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환경세 및 부과금이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시된 사례가 별로 없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세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큼 높게 책정될 경우에는 국내기업에게 유리하게 조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에서는 경제적 수단에 의한 규제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세

환경세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또는 생산행위에 부과되며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행위를 변경시킬 목적으로 실시된다. 환경세의 영향은 물론 부과수준에 달려 있지만 생산비와 제품가격을 증대시켜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상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세의 영향이 행위패턴을 바꿀 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환경세의 영향이 환경세의 종류(배출세, 생산세, 제품세 또는 소비세 등)와 교역조건이 변화여부, 경쟁의 정도, 생산요소의 이전가능성 등 제반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대부분의 환경세가 아직까지는 실시 초기단계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격 및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였던 것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세가 무역과 연계하여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가격 및 경쟁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크고 또 환경세가 일반적으로는 직접규제와 더불어 실시되기 때문에 그 영우 생산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31) 직접규제의 경우 기업이 규제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조업단축, 생산금지 또는 벌과금 등의 벌칙이 따르지만, 경제적 수단에 의한 규제의 경우 시행초기에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하더라도 부과금만 내면 조업단축 또는 중단 등의 과도한 조치를 당할 우려가 없다.

2)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권 거래제도는 특정 오염인자에 대한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배출량을 조사하고 배출감액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배출권을 기업에게 분배하여 준다. 배출권을 배당받은 기업은 이를 기업간에 매매함으로써 각 기업은 스스로의 공해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다.

3) 예치금제도

예치금제도는 이미 선진 각국에서 음료용기의 회수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해서 많이 실시되어 왔었고 상당한 환경개선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가 무역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첫째 음료용기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있으며 둘째, 포장 폐기물 및 제품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예치금제도가 중점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음료 용기뿐만 아니라 포장폐기물, 폐가전제품, 폐차 등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예치금 제도가 확대 실시될 경우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예치금 제도하에서는 기업이 예치금을 적립하고 차후에 규정요건을 충족시키면(회수 등) 예치금을 환급받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기업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수 등 추가적인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와 비례하여 비용이 수반하기 때문에 제품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직접규제수단에 의한 환경규제는 제품에 대한 규제와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한 규제, 인증(Certificates) 및 마크(Labeling)제도, 국제환경경영규격(ISO 14000), 제조업자 업무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제품에 대한 규제와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한 규제, 환경 및 마크제도 등은 뒤에서 다시 분석하고 여기에서는 국제환경경영규격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

국제환경경영규격(ISO 14000)은 기업의 환경경영체제를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환경법규의 준수나 환경기준에 어느정도 부합하고 있는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활동 전 단계에 걸쳐 환경 관련 내용들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제품에 대한 규제와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제

환경보호 규제조치와 관련하여 규제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제품을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제를 할 것인가로 구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제는 주로 기술규제, 수량규제 및 상계관세 등에 의해 행해진다. 이러한 규제내용은 다자간환경협약 이외에도 TBT협정과 SPS협정 등에 근거하고 있다. 수량규제의 경우 GATT 제11조에서 수출 또는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총량에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의 무역규제 방식의 할당제 또는 수출입

허가제와 같은 수량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GATT 제20조에 근거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계관세는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환경규제수단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로서 선진국 환경론자들과 업계는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원가부담이 해당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지적하면서 환경보호 비용이 감안되지 않는 개도국제품에 환경관세부과를 주장하고 있다.³²⁾

1) 제품에 대한 규제

제품에 대한 규제는 제품의 규격 및 특성에 대한 표준, 요건 등은 제품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직접규제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직접적이고 단기적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직접규제보다는 기업 및 소비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조세 또는 부과금 등 경제적 수단에 의한 규제가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수단에 의한 규제는 그 효과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고 또 기대하지 않는 효과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실한 결과를 나타내는 직접적 규제의 실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규제는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을 통제하기 위한 간접수단으로서 제품에 대한 규제가 이용되기도 한다.

국내의 규제요건은 수입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국이 유사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한 수입국의 규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들게 되거나 또는 분리생산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상실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시행국은 선진국이고 규제대상제품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이다.

이러한 규제수준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수입국의 규제조치가 개도국의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품의 규격 또는 특성 등에 대한 규제요건 또는 표준이 규제를 실시하는 선진국의 특수한 환경적 사정을 반영³³⁾할 경우에는 그 규제요건을 충족시키기 가 더욱 어려워지고 개도국에게는 부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³⁴⁾

2)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한 규제

제품의 사용과 소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제품의 생산이나 유통, 판매, 폐기 등 제품의 Life-Cycle 전 과정을 거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단계 등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 및

32) 김준한, 유상희, 안기철, 최충규,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3., p. 56~59.

33) 예를 들면 섬유직물류의 오염원료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료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일부 선진국에서는 특정 염료를 지정하여 허용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허용되는 특정원료의 지정은 외국의 환경적 특성을 무시하여 다른 나라에게 사용하는 특히 개도국에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무공해 천연원료를 허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규제조치가 자국의 환경적 특성만을 강하게 반영할 경우에 규제조치는 국제무역의 부당한 왜곡을 야기하게 된다.

34) 이동걸, 전게서, pp.135~139.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 PPMs)에 대한 규제이다. PPMs 규제조치는 환경보호를 위한 공정 및 생산방식의 개선이나 혁신을 필요로 함으로서 기존 기업의 환경 관련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하여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³⁵⁾

환경영향을 받는 주변국이나 이해관련국은 자국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가 있다. 반면에 아무리 자국의 이익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타국의 PPMs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사법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다. 타국의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가 허용될 경우 국제무역질서가 극도로 혼란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아직까지 WTO는 PPMs 무역규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지구환경문제를 절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하한 형태로든 각국의 PPMs를 규제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PPMs 규제의 방법에는 직접규제와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간접규제, 자발적 협조체제 등이 있다. 첫째,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에 의한 직접규제방법에는 소수의 특정 PPMs를 선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방법, 생산공정에서 특정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법, 소수의 특정 PPMs 금지하고 그 외의 PPMs를 자유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배출기준 또는 성과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PPMs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둘째,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간접 규제수단으로 공해배출권, 공해배출부과금, 과세, 보조금, 인증 및 환경마크제도 등이 있다. 셋째, 자발적 협조에 의한 방법으로 환경마크 부착 상품 및 기타 환경친화적 상품의 구매 유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수입금지, 특정원료의 수출금지, 환경상계관세,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적용 또는 박탈, 해외직접투자의 장려 또는 억제, 기타 재정금융상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3) 인증 및 환경마크제도

수입품이 실제 국내로 유입되었을 경우 기술적인 한계나 비용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전수조사 등이 어려울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인증제도나 마크제도는 개별 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각국의 상이한 경제 및 환경 목표를 추구하며 환경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호인증의 개념이 인정되어야 하며, 환경기준을 통한 인증에 있어 환경기준이 어느 정도 동등한 기준에서 편차를 두어 성립되어야 하며, 인증을 위한 국제적인 기본 원칙과 규칙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35) PPMs는 공정이나 생산방식을 변경할 경우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관련 PPMs와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무관련 PPMs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제품에 대한 규제로서도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자의 제품무관련 PPMs가 일반적인 논의 대상이 포함된다.(이동걸, 진계서, p. 141~143.) 그러나, 국내적 환경문제에 있어 제품자체 또는 제품관련 PPMs에 있어 차별적 무역효과를 야기하지 않는 한 WTO 규범하에서 무역제한조치가 인정되나 지구적 환경문제는 차별적 무역효과를 야기하지 않는 한 WTO 규범하에서는 인정된다. 제품무관련 PPMs에 대해서는 국내적 환경문제는 향후에도 WTO 규범하에서 인정될 소지가 거의 없고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환경협약과 결부되어 WTO 규범하에서 인정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이춘삼, 『국제통상법』, 법문사, 1999, pp. 102~110.)

환경마크(Eco-Labeling)란 제품이 타 제품과 비교하여 환경 친화적인 상품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표시로서, 환경마크제도는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 기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ISO에서는 환경마크를 제3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방식과 제조업자의 자체적인 선언방식,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제품 정보 공급방식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해서 WTO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3. 관할내적 규제와 관할외적 규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는 국가관할권의 귀속여부에 따라 관할내적 무역규제와 관할외적 무역규제로 구분되는데, 관할내적 무역규제는 자국관할권내에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인데 비해 관할외적 무역규제는 자국 관할권밖의 역외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컨대 1991년 참치수입규제사건은 미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동태평양 열대수역내에서 포획된 참치에 대해 미국의 수입규제로 발생하였다. 같은 사례로 1991년 미국은 바다거북이(Hawksbill sea turtle)의 껍질을 수입하는 일본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1991년부터 EU는 포획방법의 잔인성을 이유로 다리를 묶는 닛(leg hold trap)의 사용을 허용하는 국가로부터 모피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특히 타국역내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내적 무역규제는 타 국의 사법주권의 침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³⁶⁾

예컨대 관할외적 무역규제가 허용된다면 각국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환경규제조치는 타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며 단순히 자국과 환경정책이 상이한 국가로부터 수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국제무역질서는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WTO체제상 각국은 조약상의 근거가 없는 한 또는 상대국가의 동의가 없는 한 자국 관할권 밖의 자원에 대한 환경오염을 이유로 무역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³⁷⁾

4. 환경협약 등 국제규범에 의한 다자간 규제와 국내법상의 관련규정에 일방적 규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는 관련 조약의 준부에 따라 국제환경협약상의 관련 규정 또는 WTO규범에 입각한 다자적 무역규제와 국내법상의 관련규정에 입각한 일방적 무역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협약이나 국제규범과 관련된 환경 보호 규제는 특별히 실체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별 국가 또는 이후의 논의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국내법상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규제는 일반적으로 환경선진국 위주에 행태로 볼 수 있는데, 이는

36) S. Charnovitz, "Exploring the Environmental Exceptions in GATT Article XX", 25 Journal of World Trade 35, 1991, p. 53.

37) 최승환, "WTO체제상의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국제법평론-I(통권 제4호), 국제법 출판사, 1995, pp. 85-98.

국제적인 협정이나 조약에 근거하지 않고 자국법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무역규제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논란이 많은 것은 개별 국가가 조약상의 근거없이 국내법에 근거하여 국제통상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환경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국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제교역질서의 혼란과 더불어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자유무역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동시에 환경규제체제의 효과적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유무역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방주의에 입각한 환경보호규제보다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³⁸⁾

〈표 3〉 검토대상 환경규제의 분류

규제 근거	규제 목적	규제 형태
국제협약	멸종위기의 생물종 보호(CITES)	전면금지
	유해폐기물 국경이동통제(Basel Convention)	일부제한(품목별, 상대국별)
	대기권 오존층 보호(Montreal Protocol)	교역통제(사전통보, 승인)
개별 국내입법	포장, 재활용 기준	포장재질 규제
	제품기준	회수의무
	제조공정기준	특정물질 사용금지

자료 : 강상인·박준영,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원, 1999.

5. 시사점

본 장에서 분석한 환경보호 관련 규제조치를 직접적/간접적 규제, 제품/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제, 관할내적/관할외적 규제, 다자간/일방적 규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직접적 규제의 경우는 간접적 규제 즉, 경제적 규제보다 그 운용에 있어 자의적인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규제효과의 경우 직접적 규제보다 투명한 운용과 효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제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의한 규제의 경우 직접적 규제에 대부분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환언하면 제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의한 규제는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환경보호의

38) Kevin. C. Kennedy, "Reforming U.S. Trade Policy to Protect the global environment : a Multilateral approach",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1994, Vol. 18 Issue 1.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자유무역을 침해하는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제는 급격한 시행보다는 유예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 기업이 충분히 적응을 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투명한 기준이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관할내적/관할외적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관할외적 규제를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대국과의 마찰을 야기하고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관할내적 규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외적 규제에 대해서는 상대 주권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환경선진국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관할외적 규제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다자간규제와 일방적 규제조치의 경우 향후 모든 환경관련 국제규범은 다자간규제 체제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일방적 규제조치의 경우 WTO체제 안에서 가입국간의 상당한 마찰과 동시에 자유무역의 후퇴 등의 영향을 가져올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다자간 규제형태로 진행 되어 가는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환경선진국들은 일방적 규제제한에 따라 다른 돌파구로 자국의 높은 환경수준을 고려하여 다자간 규제 틀 안에서 환경기준을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높게 설정한다든지 하는 형태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또 하나의 시사점은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조치는 앞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직접적/경제적 규제, 제품/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제, 관할내적/관할외적 규제, 다자간규제/일방적 규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규제들은 서로 각각의 범주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틀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품이나 공정 및 생산방법(PPMs), 인증 및 환경마크와 관련된 규제제도는 환경보호를 위한 직접적 규제수단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규제조치는 구체적으로 WTO협정 가운데 TBT협정³⁹⁾이나 SPS협정과 그 내용이 일정부분 연관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WTO 가입국이지만, 다자간환경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구속여부나 관할권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의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나 규제가 여러 가지의 내용과 관여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9) TBT협정은 공산품과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및 생산방법과 관련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등에 적용된다. 즉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조치 등을 취하여 수출국 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하여 기술규정에 대한 무역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조치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선진환경국가의 높은 환경기준을 여타의 국가에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제한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V. 결 론

환경보호는 이제 범지구적차원에서 신속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들이 국제교역에 있어서 불필요한 보호무역적 수단으로서 작용할 경우 1947년 GATT가 출범한 이후 줄곧 유지되어 온 자유무역이 환경보호라는 큰 명제 아래 후퇴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두 목표가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을 실현해 나아가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환경관련 국제협정의 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조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환경문제는 분석한 바와 같이 환경문제의 광범위한 특성으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국제협정과 규제조치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규제조치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앞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향후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조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규제 회피를 위한 FTA의 활용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관련 국제협약을 개별 기업이 정확히 준수하여 각각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생산공정 등을 당장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FTA체결국을 통한 환경규제의 회피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환경협약의 경우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구환경의 전반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기준이나 원칙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각의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원칙이나 기준에 따라서 국내입법의 형태로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각 국의 환경규제를 보다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FTA체결국과 거래를 함으로서 비체결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FTA 체결 시 환경관련 원칙이나 규제를 우리나라 기업이 시장진출 시 적합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또는 제도의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 지위 확보를 위한 국제환경협력강화를 들 수 있다. 현재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의 부담이 선진국과 개도국 중 선진국은 높은 수준의 의무를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기후변화협약 등 몇몇 국제협약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국제환경보호를 위한 감축의무나 책무 등이 급격한 이행의무는 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향후 국제 환경협약의 강화와 더불어 여러 분야의 환경협약이 지속적으로 확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더 많은 오염물질 감축이나 보호의 의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나아가 국제기구 등에서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프렌즈그룹 등을 결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환경 관련 각종 의무에 있어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급격한 의무 강화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환경관련 종합포털네트워크의 구축이다. 환경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부처로 환경부를 들 수 있는데 현재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교역과 관련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경우도 수출입과 관련된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국제기준이나 원칙, 또는 개별 국가의 환경기준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환경문제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전개됨으로서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제교역에 있어 환경 관련 각종 협약 및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부처간의 업무분장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 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제도의 확대이다.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해결 시 현재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개별 국가의 사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마찰과 관련하여 충분한 인력과 정보, 재정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이나 불이익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에 있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개별 수출기업이 외국의 환경 관련 기준이나 규제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불이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제공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지원제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김기홍 외, 『무역과 환경』,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68집, 집문당, 2005.
 이동걸, 『무역과 환경』, 산업연구원, 1995.
 이춘삼, 『국제통상법』, 법문사, 1999.
 이호생, 『무역과 환경 : GATT/WTO의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환경부, 『2007 환경백서』, 2007.
 강상인·박준영,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원, 1999.
 김준한·유상희·안기철·최충규,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3.

- 이은섭·이양기, “WTO 체제하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무역학회지」, 제30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5. 6.
- 이재영, “WTO 기술무역협정과 위생 및 식물검역협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12.
- 이춘삼, “WTO 협정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성립요건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6.
- 정형진, “WTO에서 무역과 환경”,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제19집 제2호, 2006. 6.
- 최승환, “WTO 체제상의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국제법평론- I (통권 제4호), 국제법 출판사, 1995.
- 한주섭·홍성규, “WTO 체제하에서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 Charnovitz. Steve, "The Law of Environmental "PPMs" in the WTO : Debunking the Myth of Illegality",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7, 2002.
- Copeland, Brian R. & Taylor M. Scott, "Trade and the Environment : Theory and Evid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 GATT Dispute Panel Report,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1991.
- Hunter, D., Salzman, J. & Zaelke, 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1998.
- Kevin. C. Kennedy, "Reforming U.S. Trade Policy to Protect the global environment : a Multilateral approach",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1994, Vol. 18 Issue 1.
- McDonald, Janet, "trade and the Environment : Greening the GATT : Harmonizing Free Trade and Environment Protection in the New World Order", Environmental Law Vol. 23, 1992.
- Pierre, 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Trade and the Environment in Canada, in OECD", Environmental Polici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1992.
- S. Charnovitz, "Exploring the Environmental Exceptions in GATT Article X X", 25 Journal of World Trade 35, 1991.
- Sennator. Max Baucus, "Protecting the Global Commons : The Nexus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al Policy", Address Before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ct. 30, 1991.
- Shaffer Gregory C.,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Under Challenge : Democracy and the Law and Politics of the WTO's Treatment of Trade and Environment Matters",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25, 2001.
- Weiss, Edith Brow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 The Introductory Framework." Environmental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United Nation University Press, 1992.
-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ttp://www.unep.org>